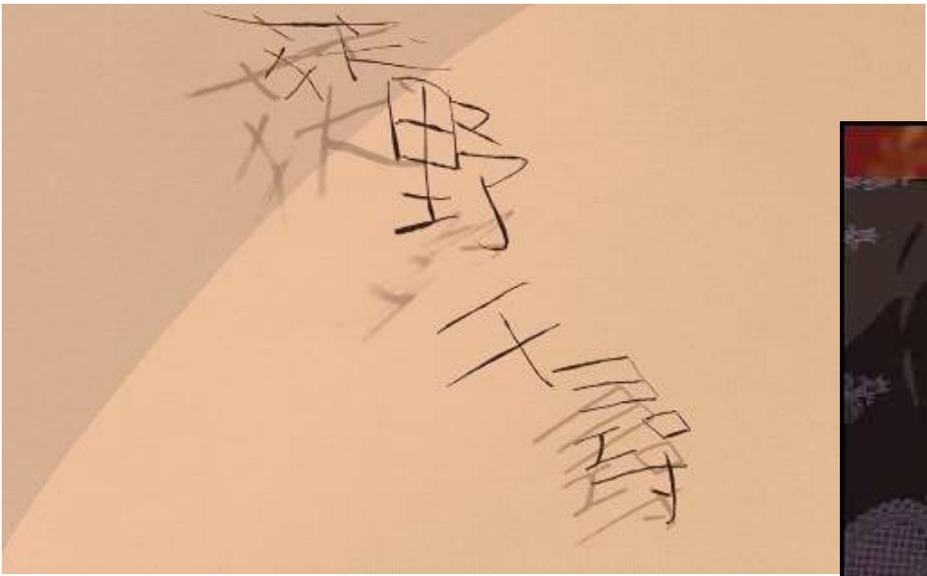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권

창작자연대 창공
발표자 지원준/하신아

A 3D animated character with a large, white, multi-tiered turban and a blue dress is shown from the chest up. The character has a wrinkled face with blue markings around the eyes and is holding a white envelope or letter in front of their mouth. They are wearing large, colorful beaded bracelets on both wrists. The background is a dimly lit room with wood-paneled walls, a lamp, and a desk with a chair.

치히로라고 하느냐?



“네 이름은
이제 치히로가 아니다.
너는 이름을 빼앗겼다.”



계급사회의 노동과정 = 이름을 잃어 버리는 과정

그러나

문화예술 창작자들은 이름을 잃지 않음

(표절, 도용 등 불법적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입직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이름을 잃지 않기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났어



네 본명은 코하쿠야





내 진짜 이름은
니기하야미 코하쿠누시

한국에선 불가능!!!

한국 창작자들이 직면한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낯설어짐(Entfremdung)**

한국 창작자들이 직면한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낯설어짐 (Entfremdung)



이름의 가치를
올릴 것을 요구

노동력
같이 붓기

플랫폼사업자



이름에 대한
모든 권리 독점

창작자의 이름에
대한 대가 요구

지속적으로
막대한 이윤 보장



창작자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모조리 빼앗기면
창작자는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급격히 낮설어짐
이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가 소유한 내 이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몸을 갈아 넣는 노예로 전락

**나의 소유물이라고 믿었던 내 이름에게
지배 당하는 낯선 상황에 직면**





이러한 낯설어짐 구조를 이해한 학자들은 몇몇 있었으나
**이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10년 넘게 천착한 학자는
남희섭 박사님이 유일했다.**

남희섭 박사의 관점

- 저작권은 창작자의 이름과 떼어낼 수 없는 권리 인신귀속성 엄존
- 인신귀속성 권리를 재산권으로만 보는 것은 부당
→ 인권으로서의 저작권 개념 성립
- 창작자를 자기 이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면
이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갈아 넣은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후 보상이 필수



새로운 관점이 열려 준 새로운 지평



Copyleft 운동에 대한 창작자들의 막연한 거부감 혁파



창작자에게 보상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유자에게 향유권이 있으며
이 두 가지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양 쪽 모두 권리를 배앗긴 덕에 생긴 착시 현상임을 직시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창작자 운동과 소비자 운동의 연대 가능성 발견

그동안 자기 권리 찾기에만 국한돼 있던 시야를 넓혀 새로운 지평을 밝힘



새로운 지평에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 운동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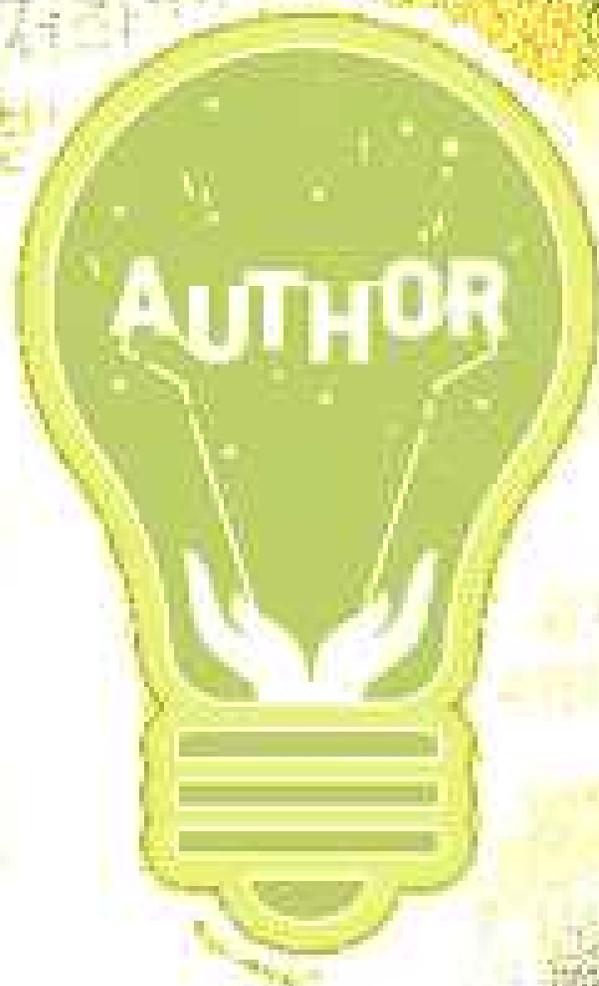
2018년 11월 노동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주요내용

- 가. 장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 및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은 무효로 함. (안 제46조의2 신설).
- 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안 제46조의3제1항 신설).
- 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 라.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함
(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 마.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은 중여 또는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무효로 함
(안 제46조의3제4항 신설).
- 바.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비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의4 신설).
- 사. 저작자 및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등과 법인등에게 저작물의 이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5 신설).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반대 정책토론회

2019. 6. 28
국회 의원회관



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창작노동자 권리추진

저작권을 샀다고
Author가 될 순
없습니다!

저작권은 200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비서관이 수임된 이후에 부여된다.
사건은 200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장이 임명된 이후에 수임되고
정경호는 수임된 이후에 임명된다.





step2
"저작권이 있다는 건 아는데
사무 일체 영토로 뺐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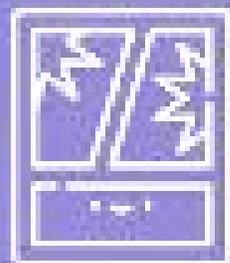


step4
"특약에 의해서
수익을 받고 있었는데,
특약을 안 맺은
새로운 단체가
사무 나와!"

step1
"??? 으림하던
저작권이 있었어???"



step3
"이 상한 수익분배 구조랑 갑질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뺏기는 셈이야..."



step5
"우리 영수 시스템도 있고
다 돼 있다 더 투명하게,
더 늦게 더 공정하게 만들자!"



기반을 둔 개념의 변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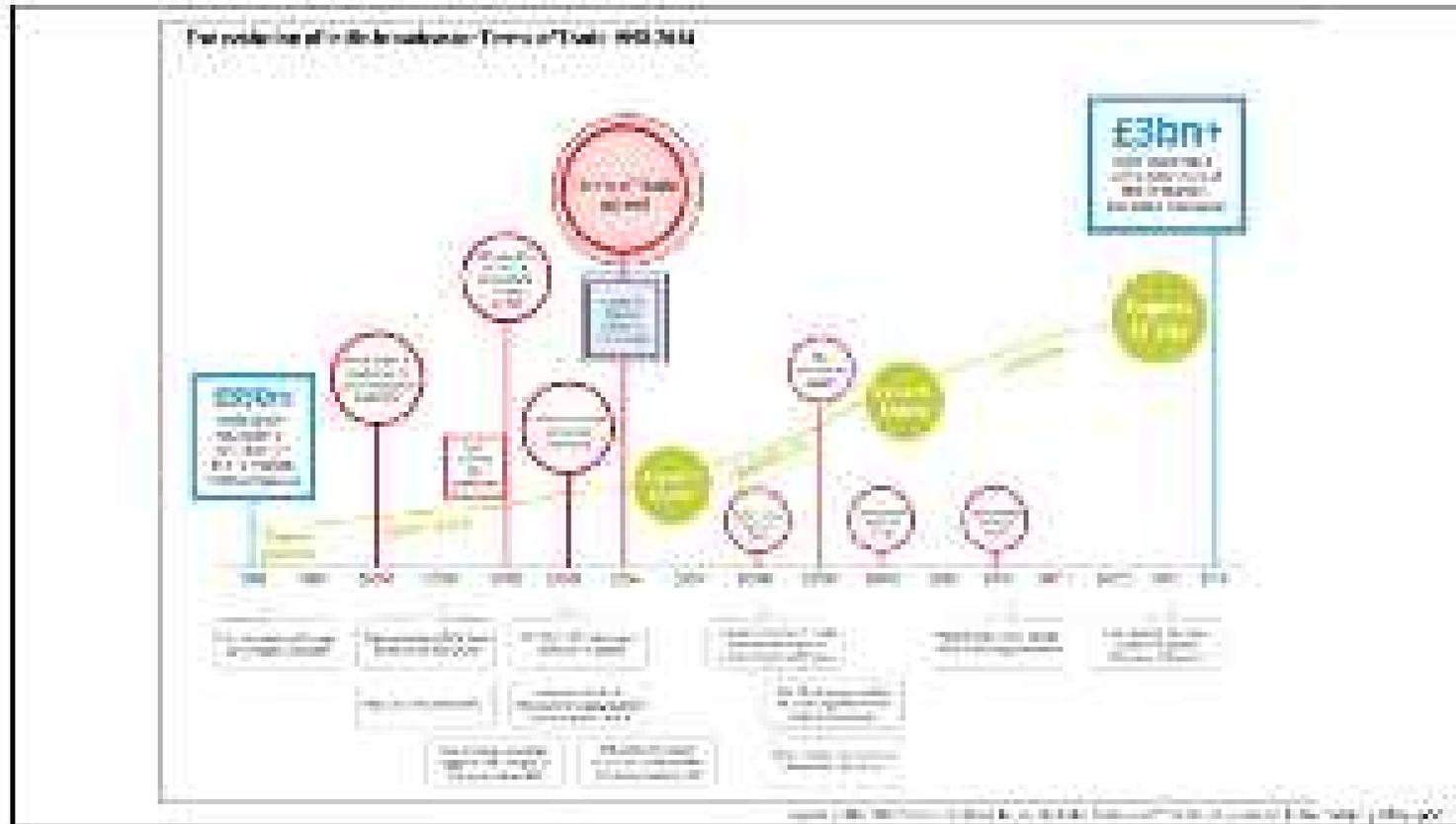
창작물은 인류 모두의 것,
그러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자는 소수.

인류 모두의 것이 될 창작물을 창작하는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저자author’개념 대중 운동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저작권 인식

설득을 위한 경제학적 접근 필요



(2017. 연론학회 발제문에서 발췌)

시스템다이내믹스 적용,
보다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로
설득에 임하는 전략 모색

입법운동의 방향

1. 영상저작물 관련 조항의 부분개정 운동
2. 현행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 운동
3.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신법 제정 운동

THANK YOU